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및 배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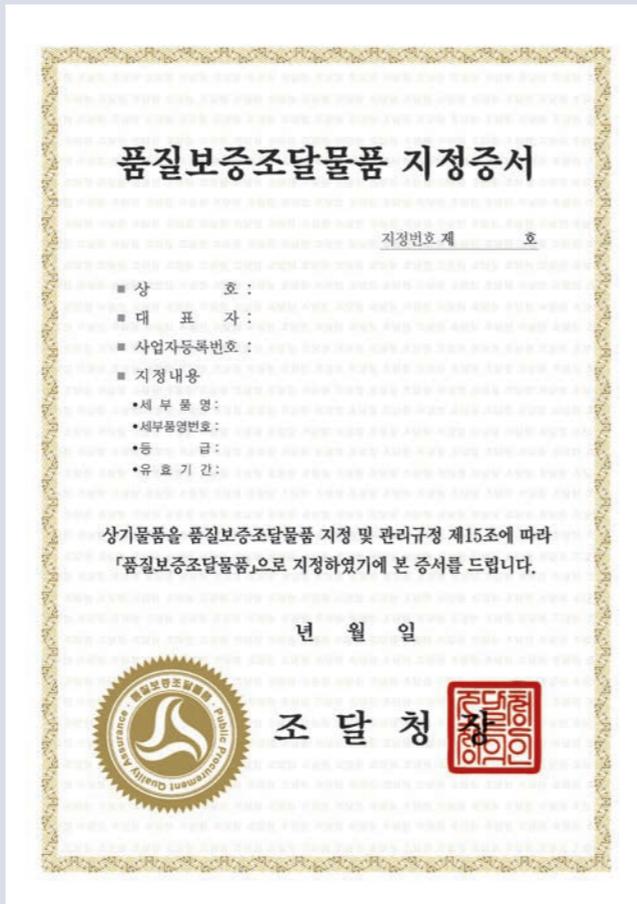


## 심사기준표

범주	NO	심사항목	배점	항목별 배점
1. 품질경영 시스템	1	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	200	25
	2	품질경영 관리		20
	3	법규관리		25
	4	기술관리		30
	5	위기경영		10
	6	문서관리		20
	7	공급자관리		10
	8	지속적개선		40
	9	교육		20
2. 생산공정	1	개발프로세스	500	50
	2	자재/부품관리		40
	3	공정관리		90
	4	작업현장관리		60
	5	설비관리		35
	6	포장/참고관리		50
	7	검사 및 시험		60
	8	품질정보관리		45
	9	부적합품관리		40
	10	고객불만처리		30
3. 성과지표	1	연구/개선성과	300	30
	2	생산프로세스성과		140
	3	신용평가/조달청실적평가		130
4. 신인도	1	신인도 평가	±10	+10~10
전체합계(1,000점)			1,000	1,000

☞ 철저한 품질관리 유지  
- 유지관리 현장심사(1년 주기) 및 지정기간 중 불시 품질점검 시행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증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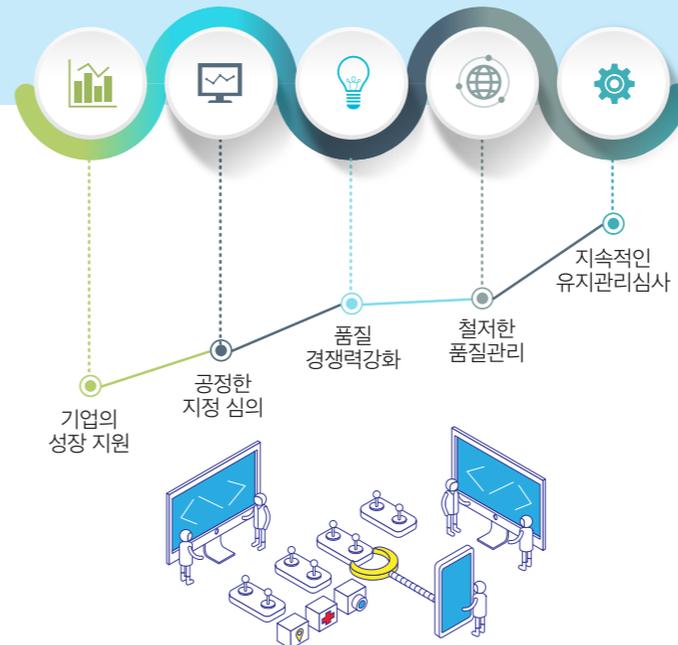
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구매조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된 '품질보증조달물품' 제도를 만나보세요!

**조달품질원**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16-20(울곡동)  
TEL. 070-4056-8025, 8022, 8030  
FAX. 070-4056-8057

조달업체용

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안내



조달업체는 '품질보증조달물품'으로 지정되면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어 검사비용 절감, 고객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됩니다.

**조달품질원**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



## '품질보증조달물품'이란?

조달업체의 품질경영·공정관리·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'품질보증조달물품'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관련 근거

- ☞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(조달물자의 품질관리)
- ☞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2 (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)
- ☞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효과

- ☞ 조달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 높임
- ☞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
- ☞ 품질보증조달업체의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

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

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

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·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■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「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는 자

■ 신청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

※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서류,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서,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제출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방법

■ 온라인 접수: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시스템 (나라장터 → 조달업체 로그인 → 물품 →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→ 심사신청)

※ “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”의 “자가진단” 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“심사 신청”

■ 당해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기간

구분	접수기간
제1차	매년 01.01 ~ 03.31
제2차	매년 04.01 ~ 06.30
제3차	매년 07.01 ~ 09.30

※ 최초신청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

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

모든 품명에 대한 신청을 허용하되,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

■ 제품의 이동·설치·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·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

■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·식료품류, 동·식물류, 농·수산물류, 무기·총포·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및 의약품(농약) 등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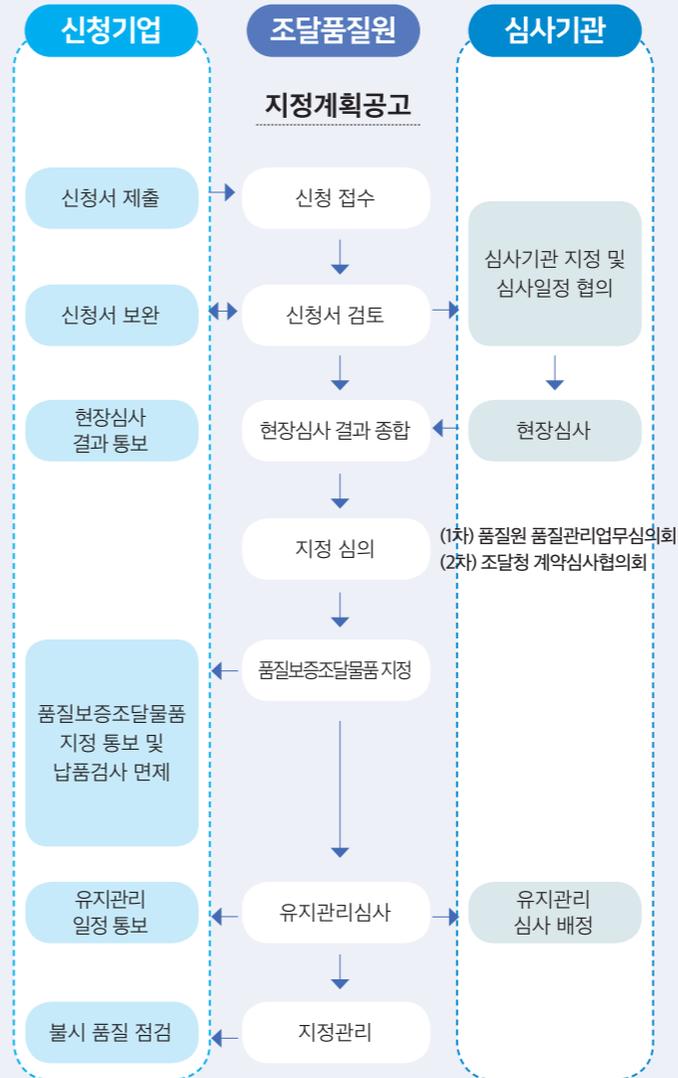
등급	S급	A급	B급			예비물품	부적격
			B+	BO	B-		
기준	750점 이상	700점 이상	670점 이상	630점 이상	600점 이상	550점 이상	550점 미만
유효기간	5년	4년	3년			1년	-

※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, '납품검사 면제' 혜택만 부여됨.  
※ 재지정 심사 시 B0, B- 등급은 심사결과가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재지정

#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

- 01 납품검사면제(S등급 5년, A등급 4년, B등급 3년, 예비물품 1년) 단, 안전물자·주요공정 외부위탁 생산 물품 등은 납품검사 면제 혜택 제외
- 02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(A등급 이상 최대 2점, B등급 최대 1점) 및 품질소명자료로 인정
- 0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.5점 부여
- 0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.75점 부여
- 05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
- 06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면제 가능(단, 중기간 경쟁 물품 제외)
- 07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에 대해서 전용물 운영 및 마크 부여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절차



#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절차 및 방법



## 현장심사

-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담당할 외부 심사기관을 배정
- 심사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고, 심사 대상 업체와 심사일정을 협의·조율한 후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
-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·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

## 지정심사

- 현장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 심의회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지정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

## 품질보증 조달업체 성과

